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

*** 공고일정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공·민간 공연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기획·제작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공연콘텐츠의 비수도권 지역 유통**을 지원하여 지역 간 문화 소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공연시장의 활성화 및 관객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공모의 공고일정을 변경하니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7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2026년)	2027년
(공연단체) 지원 대상	▲민간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공공 공연예술단체·기관(광역·기초 지자체가 설립한 단체)	▲민간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공공 공연예술단체·기관(광역·기초 지자체가 설립한 단체),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공연작품)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KOPIS)에 집계된 유료 공연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전막 공연작품 ▲KOPIS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 기준,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10위 이내 작품 ▲KOPIS 기준, 장르별 회당티켓판매액 상위 40개 공연 중 유통 희망 작품	**2024년 1월 1일 ~ 2026년 9월 30일**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KOPIS)에 집계된 유료 공연 중,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전막 공연작품 ▲KOPIS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 기준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10위 이내 작품 ▲**정부 시상**(대통령상·총리상·문체부 장관상)**으로 작품상을 수상한 공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공연 중 ①**KOPIS 집계 유료 티켓 판매율 80% 이상 및 객석점유율 50% 이상을 충족**하는 작품, 또는 ②**KOPIS 예매상황판 기준 해당 권역·장르별 월간 티켓판매액 상위 20위** 이내 작품
(공연시설) 지원 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800석 이상 객석을 보유한 공공 공연시설(등록공연장)의 실내 공연장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700석 이상 객석**을 보유한 공공 공연시설(등록공연장)의 실내 공연장
(공연시설) 지원 규모	최대 3개 작품, 최대 3억 원 지원	최대 3개 작품, **최대 2억 원 지원**

* 상기 표는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공모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 모 명)**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

○ **(사업목적) 시장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공연콘텐츠의 비수도권 유통**을 확대하여 **지역 관객의 공연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간 **문화 소비 격차 완화** 및 **비수도권 공연시장 활성화**

○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 (공연 기간: ~ 2027년 12월 12일(일) 종료)

○ **(사업내용)** 시장성과 대중성이 검증된 우수 공연콘텐츠의 비수도권 공공 공연시설 유통지원

○ **(지원규모)** 총 110억 원 내외 지원 (예정)

* 국회 정부예산 확정액에 따라 총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매칭된 공연의 유통비용(공연료, 홍보마케팅비, 회계검증 수수료, 보험료 등) 일부를 공공 공연시설에 지원

□ 지원 방식(자율 매칭)

○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이 협의를 통해 매칭한 공연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최종 지원금은 사업별 지원한도 및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확정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공연시설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공연시설은 공연단체·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사업을 책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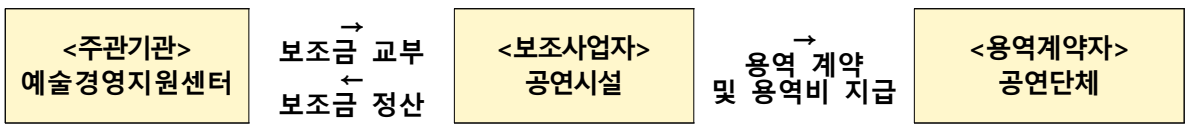
*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이 제작·기획한 작품을 공연단체 자격으로 타 지역 공연시설에 유통하는 경우, 상호 매칭된 공연시설과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이 가능해야 함

※ 참고

공연시설	운영주체	보조사업자
공연 개최 시설	공연시설 운영기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 및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신청 전 'e나라도움, 보탬e' 권한 주체 및 교부정산이 가능한 통장 사용 여부 확인 필수

○ **(지원 절차)**



□ 신청 대상 및 지원요건

① 공연단체

○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민간 공연단체 및 기획제작사(제작 공연장 포함), 공공 공연단체·기관(광역·기초 지자체가 설립한 단체),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 **(지원요건)**

- 신청 작품의 기획·제작 또는 공연 유통이 가능한 단체·기관·시설

  * **공연작품 권리사항 협의 완료** 확인서(지정양식)를 필수 제출하고, 허위 제출 또는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지원 대상 공연의 주최·주관, 기획제작사로 등록된 단체·기관·시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안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KOPIS')은「공연법」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전담기관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연계 예매처의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수집·집계하여 공연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객관적인 공연 이력 및 티켓판매 실적을 확인하고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OPIS에 집계된 정보를 공연유통플랫폼을 통해 활용합니다.

※유의사항

- KOPIS는 연계 예매처를 통해 수집·집계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연계 예매처를 통해 수집되지 않은 공연정보 및 티켓판매 실적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KOPIS에 신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KOPIS에 이미 수집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시설의 사업 신청 단계에서 공연 일시·장소, 공연 용역비, 수익배분 및 수행 역할 등에 대해 해당 공연시설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기관·시설

-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연시설과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단체·기관·시설

※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단체)

- 사업자등록증 미소지 단체
  *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는 참여 불가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 지역 순회공연 운영대행사

② 공연작품

○ **(신청대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작품

* 다원/복합 장르는 주된 1개 장르로 선택하여 신청
* 작품의 지원요건 충족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 **(지원요건)** 전막 공연을 완료하여 유통이 가능한 공연작품으로,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공연작품 요건을 충족하는 작품

- 2026년 9월까지 1회 이상의 전막 유료공연 실적이 KOPIS에 집계된 작품
  * 유료공연 이력은 KOPIS 공연 DB의 해당 공연 상세 화면을 통해 확인하며, 공연단체명·공연명·공연기간·티켓가격이 확인되도록 제출
  * 단, KOPIS 공연 DB상 티켓가격이 무료로 표기되어 있으나 KOPIS 미연계 예매처에서 유료 판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매처 판매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시 유료공연 이력으로 인정 가능
- 아래의 '**대표공연 콘텐츠 추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작품

구분	대표공연 콘텐츠 추가 요건
①시장성 검증 작품	**실적 산정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24~'26년 KOPIS「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분기·반기·연간 발행 기준,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10위** 이내 작품 * ['24~'26 KOPIS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 보고서 바로가기]
②수상 실적 작품	**실적 산정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체부장관상) 작품상 수상작** * 시상실적 증빙자료 양식 별도 제공
③공공시설 제작 우수작품	**실적 산정기간: 2025년 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25~26년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KoCACA)「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기획·제작된 작품 중,** 아래 ①의 사업 대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②의 성과 실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작품 **① 특성화 지원사업 대상 조건** 1) 2025년: 지원사업 중 **'신작제작형' 2차 지원작으로서 성과 평가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작품** 2) 2026년: 지원사업 중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 및 '기존 레퍼토리 정착'으로 지원받았으며, 의무 공연 횟수를 충족한** 작품 **② 성과 실적 기준 (1, 2 중 하나 이상 충족)** 1) KOPIS 집계 기준, **유료판매율 80% 이상 및 객석점유율 50% 이상인** 작품 2) KOPIS 예매상황판 기준, **해당 권역·장르별 월간 티켓판매액 상위 20위** 이내 작품 ※ 본 유형의 대상 작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연 용역비 등 관련 예산 정보를 공연시설에 공개할 수 있는 작품
- 티켓판매수, 티켓매출액 등 신청 작품의 과거 공연실적을 공연시설에 공개할 수 있는 작품

※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작품)

1) 대중음악(K-POP, 트로트) 콘서트
2) 예술적 창작 및 표현보다 오락적 볼거리, 기술·기예 시연 또는 관객 참여형 이벤트 제공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구성된 쇼·엔터테인먼트형 공연(예: 마술쇼, 개그·코미디쇼, 무예·마샬 아츠 시범, 곡예·묘기, 토크쇼 등)
   * 단, 위 요소를 작품의 주제·서사·인물·극적 상황 또는 정서 등을 구현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 예외 적용 여부는 ① 작품의 주제·서사 명확성, ② 해당 요소와 작품 주제·서사 간 연계성, ③ 작품 구성 내 통합성, ④ 표현수단으로서의 기능, ⑤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예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소의 활용 방식과 작품 내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필수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만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증빙자료 및 제출 방법은 p.11 '제출서류' 및 FAQ 참고)
   * 작품의 명칭이나 장르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작품의 기획 의도, 실제 구성 및 제출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정)
3) 해외예술단체·예술가의 단독 내한공연(단, 국내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협연은 가능)
4) 쇼케이스
5) 단독 리사이틀 공연
6) 국립예술단체 작품, 국립기관(공연장)이 기획·제작한 작품
7) 장소 특정형(야외, 전용공간 등) 작품
8)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종교기관 및 소속 단체 관련 행사성 작품(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9)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의 지역축제, 발표회, 정기연주회 등 연례 운영 프로그램 일환의 공연

③ 공연시설

○ **(신청대상)**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700석 이상 실내 등록 공연장을 보유한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등)

- **(문예회관)**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
-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

  *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대상 공연장 목록 [참고 1] 제공
  * 동일 운영주체라도 시설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 신청 예시

운영주체 : (재)예경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 : 예경문화재단이 예경아트센터와 예경시민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구분	신청 및 교부
시설별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하나의 운영주체가 통합신청 및 통합교부** - (재)예경문화재단(예경아트센터) | 작품 1개, 1.2억 원 신청 및 지원 - (재)예경문화재단(예경시민회관) | 작품 1개, 0.8억 원 신청 및 지원
시설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시설별로 각각 신청 및 시설별 교부** - (재)예경문화재단(예경아트센터) | 작품 2개, 2억 원 신청 및 지원 - (재)예경문화재단(예경시민회관) | 작품 2개, 2억 원 신청 및 지원

○ **(지원요건)** 지원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시설

- 공연이 가능한 등록 공연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시설
- 공연시설의 사업 신청 단계에서 공연 일시·장소, 공연 용역비, 수익배분 및 수행 역할 등에 대해 해당 공연단체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시설
- 지원금 외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는 시설

  * 총사업비 1억 원 = 보조금 9천만 원 + 자부담 1천만 원(총사업비의 10%)
- 공연단체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공연(또는 예술행사) 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용역비 집행이 가능한 시설
- 공연유통플랫폼 내 공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를 제공한 시설

  * 필수 제출 기초 무대기술자료

분류	필수 제출자료
무대	무대장치 목록, 평면도 및 단면도, 배치도
기계	무대기계 장비 목록
조명	조명 장비 목록
음향	음향 장비 목록

  * 상기 목록 외에 정보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사업 신청 가능
  * 추후 공연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요구자료 제공 필수

지원사업 제외 대상(공연시설)
- 서울·경기·인천 소재 공연시설(문예회관 등)
- 국립 또는 민간 공연시설
- 박물관·미술관 등 부속 공공시설

□ 지원 규모

○ **(공연단체 기준) 단체당 1개 작품, 총 10억 원 이내 지원**

- **(유통 한도) 단체당 최대 6개 공연시설에서 공연 유통 지원**

  * 공연단체는 플랫폼에서 공연작품별로 지원신청하고, 공연시설과 '공연협의' 단계에서 지원 규모(유통 건수, 보조금 한도)를 고려하여 매칭 확정 필요
  * 보조금은 공연시설에 교부되며, 공연시설이 공연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연 관련 비용을 지급

○ **(공연시설 기준) 시설당 최소 1개 ~ 최대 3개 공연 작품,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 공연시설은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 필수
- 유통협의 시, 공연시설-공연단체 간 현장 여건(장비·홍보·운송 등)에 따라 예산 항목 및 금액 조정 가능(증감액 조정 비율 제한 없음)
-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2억 원)은 공연시설의 신청 예산이 총 지원예산(1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지원예산을 신청시설 수로 나눈 금액(시설별 상한액, 총 지원예산 ÷ 최종 지원대상 시설 수)으로 산정한 지원금 조정 가능

* 공모 신청 공연시설 수에 따라, 공연시설별 최대 국고보조금은 2억 원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예) 공연시설당 최대 2억 원까지 공모 신청받지만, 최종 공모 신청 공연시설 수에 따라 공연시설별 최대 국고보조금은 1.9억 원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단, 보조금 신청금액이 최종 산정된 공연시설별 최대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금액 전액 지원 가능

□ 공통 참여요건

○ 공연유통플랫폼(공연예술유통 P:art:ner) 회원가입 및 플랫폼을 통한 신청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사업 내용(일시, 장소, 예산, 수익분배, 역할 등)과 무대·장비 조건을 사전협의(공연 협의 확인서 제출)

○ 유료 공연 필수(정가 20,000원 이상/할인정책 적용 가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집계 가능한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시스템 이용 및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판매실적 공개 필수

□ 중복 신청 및 참여 제한

○ **동일 작품은** 「2027년 공연예술 지역유통」「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중 **1개 사업에만 신청·지원할 수 있음**

○ **동일 공연시설**은 「2027년 공연예술 지역유통」「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내 **동일 공연단체·공공기관이 제작·기획한 복수 작품 중 1개 작품만 신청·지원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공연시설 또는 공연단체가 「2027년 공연예술 지역유통」「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총 10억 원 이내로 제한**

□ 지원 제한

○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확정 후, 지원 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가능

- 기획재정부「보조금법」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결정 취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기관
-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 부정수급·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
- 원작 등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관리 내규 제 11조(지원요건) 1항에 따라 1.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2. 동일한 사업계획(지원사업의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센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는 공모 지원 제외

□ 예산편성 기준

○ 총사업비의 10% 이상 공연시설 자부담금 책정 필수

○ 공연단체 공연료 및 공연시설 국고보조금은 10만 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예산 신청 *플랫폼 신청시 자동 절사됨

○ 예산편성 항목 예시

- **(공연단체 예산)** 필수항목인 상해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료는 반드시 편성

※ (공연단체 공연료 유의사항) 공연단체 공연료 책정 시 실제 소요 단가보다 부풀려 책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향후 유통사업 지원에서 배제함

- 해당 공연단체의 작품 관련 정보(예산, 참여자 등)는 국회 등에서 정보 제출 요구 시 상시 공개될 수 있음

※ 공연 계약 시 참고 가능한 「공연 용역비 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시행)」 자료를 플랫폼 내 제공 예정

목	세목	보조금	비고
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연출,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 홍보·마케팅비 - 물품운송비	* 사업참여자 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원칙(사례비를 지급받는 참여자는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02)	**- 상해보험료(필수)**	* 공연건별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 현장에 참여하는 공연단체 인력 전원 가입 필수 * 필요시 예술인복지재단 상해보험 상품 활용 가능
	임차료 (07)	- 연습공간 임차료 - 장비 임차료	* 신청주체 소유·관리 연습공간 임차료는 지급 불가 *** 건별 임차료가 550만원(부가세 포함) 초과하는 경우, 상세 산출내역 포함된 견적서 제출 필수**
	복리후생비 (12)	**-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필수)**	* 공연건별로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
	일반용역비 (14)	- 조명 용역비 - 무대 용역비 - 음향 용역비	* 소모성 공연소품 외 투어공연을 위한 신규 무대 및 소품, 의상 제작비 편성 불가 *** 건별 용역비가 550만원(부가세 포함) 초과하는 경우, 상세 산출내역 포함된 견적서 제출 필수**
②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기준 준수
③일반관리비		- 기타 간접 경비	* ①+② 총액의 5% (단, 최대 1,500만원)
④단체 이윤		- 단체 이윤 책정	* ①+②+③ 총액의 8% (단, 최대 1,500만원)
⑤부가가치세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 의무 면제자 포함) 부가세 편성 불가	* ①+②+③+④ 총액의 10% (간이과세자도 동일)

※ (원가계산서 첨부) 회당 공연료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 초과하는 경우, 원가계산서 제출 필수

-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 발급 문서만 인정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처리

※ (견적서 첨부) 건별 임차료, 건별 용역비가 550만원(부가세 포함) 초과하는 경우, 상세 산출내역 포함된 견적서 필수 제출

- 필요 시 제출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연시설과 예산을 협의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공모 신청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 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공연시설 예산)** 필수항목인 회계검증수수료, 홍보비는 반드시 편성

*단, 편성한 자부담금은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하여야 함

목	세목	자부담금	보조금	비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비상근인력(단기인력, 하우스어셔 등) 사례비 - **홍보비(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비, SNS광고비)(필수)**		
		- **회계검증수수료(필수)**		
	일반용역비 (14)	- **공연단체 공연료** - 공연 연계 부대 프로그램 운영비 - 홍보 대행 용역비 등		* **공연료는 견적서 제출 필수**

※ **(편성 불가 항목)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악기 구입비 등), 회의진행 경비(다과, 식대 등)**

· **(부가가치세 편성)**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성 가능

· **(기본 자부담)** 신청한 각 지원 유형별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 **(회계검증수수료)**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신청한 각 지원 유형에 대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함(자부담 편성 필수)**

*** 다수 유형 선정 시:** 2개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통합 교부 단계에서 총 사업비 기준으로 회계검증수수료는 변경될수 있음

* 회계 검증 수수료 단가 (이외의 예산은 추후 협의)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	회계검증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328,000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389,000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422,000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585,000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633,000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683,000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731,000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79,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82,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1,034,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1,225,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1,485,000

※ 상기 수수료는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일정 및 방법

○ **(공모 신청 기간)** 26년 10월 26일(월) ~ 2027년 1월 7일(목) (예정)

- **(공연단체)** 10.26.(월) ~ 11.20.(금) 17:00 마감 (예정)
- **(공연시설)** 12.11.(금) ~ '27.1.7.(목) 17:00 마감 (예정)

* 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제출 불가

○ **(최종 결과 발표)** 2027년 2월 초 (예정)

○ **(공모신청방법)** 공연예술유통 P:art:ner(https://gokams.or.kr/partner)

* e나라도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공연예술유통 P:art:n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단체와 공연시설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공연유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한 **B2B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단체·작품·시설 정보를 표준화해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유통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연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시설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공연정보와 유통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절차 및 일정)** 회원가입·정보등록 → 공연단체 공모신청 → 공연시설·공연단체 협의 → 공연시설 공모신청 → 공연시설 신청공연 및 지원금 확정

① 1단계	② 2단계	③ 3단계	④ 4단계
공연시설· 공연단체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단체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플랫폼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사업공고	공연유통플랫폼 **공모 신청** **(단체당 최대 1개 작품)**	**공연단체 신청 현황 검토 및 신청 결과· 공연시설 신청 안내**
상시	10.26.(월)	10.26.(월)~11.20.(금)	11.20.(금)~12.10.(목) 예정
플랫폼	**홈페이지, 플랫폼**	**플랫폼**	**홈페이지, 플랫폼**

⑤ 5단계	⑥ 6단계	⑦ 7단계	⑧ 8단계
공연시설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시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플랫폼 **공모 신청** **(시설당 최대 3개 공연, 2억원 이내)**	**공연 일정, 무대·기술조건, 예산 등 협의** **(단체·기관당 최대 6개 시설, 10억원 이내)**	공모 매칭결과 제출	공연시설 신청 현황 검토 및 최종결과 확정
12.11.(금)~'27.1.7.(목)	12.11.(금)~'27.1.7.(목)	12.11.(금)~'27.1.7.(목)	'27년 2월 초 예정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홈페이지, 플랫폼**

* 위 일정은 공모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연시설 신청 절차

회원가입, 정보등록	**공연유통플랫폼에 '공연시설' 회원으로 가입**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시설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등록 * 공연시설과 공연장 정보 미제공 시, 지원사업 신청 불가

⬇

공모 확인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공고 내 대상 공연장 여부 확인** * 비수도권 지역 공공 공연시설이 보유한 700석 이상 실내 대공연장(등록공연장) * 단, 공연시설 운영 주체당(재단, 지자체, 진흥원 등) 1개 공연시설만 지원신청 가능 *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대상 공연장 목록 [참고 1] 제공 ※ 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응모 자격을 갖춘 시설은 별도 문의

KOPIS 기준, 광역시도별 700석 이상으로 등록된 실내공연장

구분	계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700석 이상	**78**	6	3	2	6	7	9	5	3	6	13	6	1	11

⬇

공연 검색	**지원 신청하는 공연장의 시설조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2027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 '지원대상 공연작품 목록'*에서 관심 공연검색 후, 신청페이지에서 관심 공연의 지원신청정보(과거 실적, 예산, 일정 등) 확인**

	* 지원대상 공연작품 목록은 12.10.(목)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공연유통플랫폼 내 공지사항에서 공개 예정

⬇

공모 신청

공연시설은 최대 3개 작품을 지원금 2억원 이내로 공모신청

*** 지원사업 신청시 고려사항**

○ **(지원 한도)** 공연시설당 최대 3개 공연작품, 최대 2억 원 신청 및 지원
  *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공연시설은 하나로 묶어 하나의 운영주체로 신청하며, 신청 작품 수와 지원금을 합산하여 위 한도 적용
  * 동일 운영주체가 운영하더라도 시설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각각 신청 및 지원 가능

○ **(장르 구성)** 서로 다른 장르를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공연단체 제한)** 공연시설은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통합 공모사업 내 동일 공연단체가 제작·기획한 복수 작품 중 1개 작품만 신청

○ **(재공연 제한)** 최근 2년 이내('25년~'26년) 신청 공연시설에서 이미 상연된 작품은 신청 불가

○ **(유통처 제한)** <`25~`26년 한문연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대상 작품은 동일 소재지 내 공연시설 유통 불가
  예) 00시문화예술회관 제작 공연은 00시 내 공연시설에서 유통 불가

※ 장르 및 공연 구성 신청 예시

구분	신청 작품 구성	판단 사유
가능	1건: 음악 1건 2건: 뮤지컬 1건 + 연극 1건 3건: 연극 1건 + 음악 1건 + 무용 1건	- 서로 다른 장르 요건 충족
불가능	2건: 무용 1건 + 무용 1건	- 서로 다른 장르 신청 미충족
	3건: 뮤지컬 2건 + 무용 1건	- 서로 다른 장르 신청 미충족
	4건: 뮤지컬 1건 + 연극 1건 + 무용 1건 + 음악 1건	- 최대 지원 신청 건수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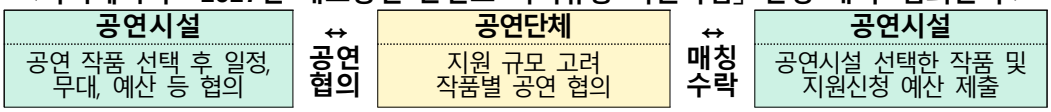
⬇

공연검색, 유통협의

신청페이지에서 관심 공연의 지원신청정보(과거 실적, 예산, 일정 등) 확인 후 '공연 협의' 버튼 선택하여 공연단체와 일정, 무대·기술조건, 예산 등 협의

* 공연시설당 서로 다른 장르 최대 3개 공연작품,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되므로 공연 일정, 무대 규모, 예산 등을 공연단체와 상호 협의 후 공연시설 공모신청 필요

<마이페이지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신청 내역 '협의관리'>



⬇

매칭결과 제출

공연단체와 상호 협의한 내용으로 매칭 완료된 공연작품 및 예산 확정하여 '지원신청서' 제출(최종신청)

⬇

결과 확정

지원 신청한 결과(공연시설-공연단체-공연작품) 확정 및 플랫폼 공모 결과 공개

* 공연단체 신청 절차

회원가입, 정보등록	**공연유통플랫폼에 '공연단체*' 회원으로 가입**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획제작사DB에서 검색되어야 회원가입 가능
	'단체'와 '공연' 정보등록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DB에서 검색되어야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연작품을 공연단체당 1개 신청**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 대상 공연작품** ① KOPIS 발행 `24~`26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기준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10위 공연 ②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체부장관상) 작품상 수상 공연 ③ `25~`26년 한문연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제작된 공연 중 KOPIS 기준 유료티켓판매율 80%이상 및 객석점유율 50% 이상 판매된 공연 또는 KOPIS 예매상황판 기준 해당 권역·장르별 월간 티켓판매액 상위 20위 공연 작품

⬇

적격성 검토 결과 확인	**지원 신청한 단체·공연작품의 지원 적격성 검토 결과 확인**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공연유통플랫폼 내 공지사항에서 사업 대상 단체·작품 목록 확인

⬇

유통협의	**공연시설과 일정, 무대·기술조건, 예산 등 협의 후, 신청 작품 전체를 합산하여 최대 6개 공연시설 선택** * 공연단체당 전체 작품을 합산하여 최대 6개 공연시설, 10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 공연 일정, 무대 규모, 예산 등을 공연시설과 상호 협의 및 사전 매칭 후에 공연시설 공모신청 **<마이페이지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신청 내역 '협의관리'>** 공연시설 (공연 작품 선택 후 일정, 무대, 예산 등 협의) ↔ 공연협의 ↔ 공연단체 (지원 규모 고려 작품별 공연 협의) ↔ 매칭수락 ↔ 공연시설 (매칭이 완료된 모든 작품과 시설의 예산 제출)

⬇

④ [8단계] 결과 확정	**지원 신청한 결과(공연시설-공연단체-공연작품) 확정 및 플랫폼 공모 결과 공개**

□ 제출서류

단계	제출대상	제출자료		양식	제출처
③단계 공연 단체 공모 신청	공연 단체·공공 기관	필수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서약서	지정 양식	플랫폼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3. 공연작품 권리사항 협의 완료 확인서		
			2. 조건에 해당하는 수상·지원·공연실적 등 증빙자료 (실적증명서, 참여확인서 등) - 해당 KOPIS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공연' 실적(자율양식)	자율·지정 양식	

			- 대통령상·국무총리상·문체부장관상 작품상 수상 실적 증빙자료(지정양식) - 해당 한문연 특성화 지원사업 공연실적 증빙자료(자율양식)		
			3. 유료공연 이력 증빙자료 (하기 중 택1) - KOPIS 공연 DB 해당 공연 상세 화면 - 단, KOPIS 공연 DB상 티켓가격이 무료로 표기된 경우, 다른 예매처의 유료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 정산서 등 제출 * 공연단체명, 작품명, 공연일자, 티켓가격이 확인되어야 함 * 세부 제출 방법은 FAQ 참조	자율양식 (pdf jpg)	
			(해당시) 4-1. 대중음악이 일부 포함된 작품의 전체 곡목 및 해당 음악의 활용방식 확인자료 * 공연 프로그램·곡목 목록·작품소개서 등 4-2. 쇼·엔터테인먼트형 공연 관련 지원 제외 대상의 예외 적용을 위해 신청하는 작품의 표현 요소 활용방식 확인자료 * 해당 요소가 작품의 서사 또는 주제 전개를 위한 표현수단으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①작품구성 및 주제 설명, ② 제외 대상 요소 활용 설명, ③ 대본 또는 장면별 구성안, ④ 공연 영상 또는 해당 장면 영상 등 * 세부 작성 방법은 FAQ 참고	자율양식	
			(해당시) 5. 회당 공연료 1억 1천만 원(부가세 포함) 초과 시 원가계산서		
			(해당시) 6. 건별 임차료/일반용역비 550만 원(부가세 포함) 초과 시 견적서		
		선택	기타 지원내역 이력·공연실적 등 증빙자료	자율양식	
⑦단계 공연 시설 공모 신청	공연시설	필수	1-1. 공연시설 사업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지정양식	플랫폼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3. 공연 협의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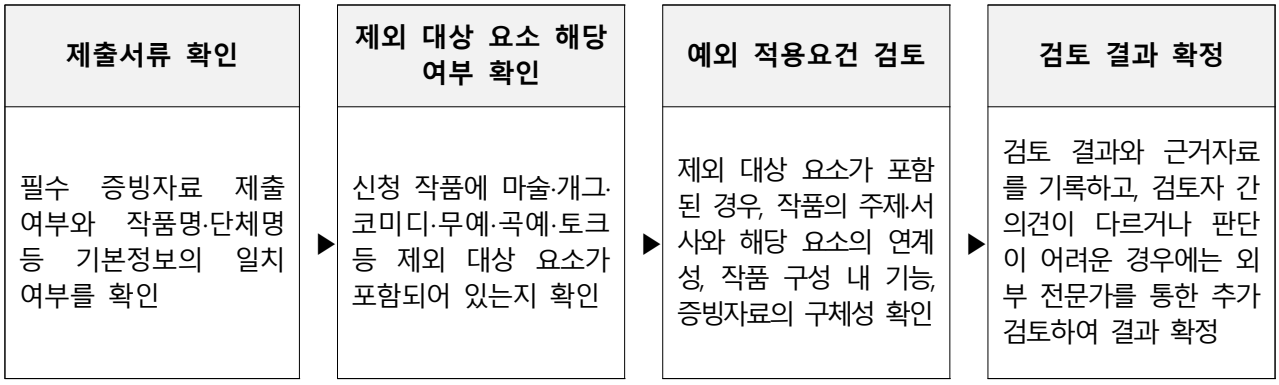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 처리

□ 검토 및 결과발표

○ **(검토방식)**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예술유통 플랫폼에 등록된 지원사업 신청 대상이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연단체, 공연작품, 공연시설의 지원 적격성 여부 검토 후 지원 신청 승인

- 필수자료 미제출 시 행정 결격 처리하며, 제출자료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검토 결과 확정



○ **(검토 기준)**

- 공연단체, 공연시설, 공연작품의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 공연단체, 공연시설, 공연작품의 지원 결격 여부
- 공연단체 및 공연시설의 신청예산 내 필수항목 편성 여부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결과 확정·공개)**

- **(참여 단체·작품 공개)** 공연단체 지원신청 후 공연단체·공연작품 지원 적격성 검토 후,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 대상 공연단체·작품 목록 공연유통플랫폼 내 공지
- **(최종 선정 확정)** 공연시설이 지원신청 한 공연시설-공연작품-공연단체의 지원사업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최종 선정 결과 공연유통플랫폼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선정 후 필수 이행 사항

○ **e나라도움**(www.bojo.go.kr) 시스템에서 지원금 교부·집행·정산

* e호조는 연계하여 사용가능하나 이외 시스템(예, 에듀파인 등) 사용은 불가

○ 지원금은 공연시설에 교부되며,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최종 선정된 지원조건에 따라 **공연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례비 지급**

* 지원 확정 후 공연시설과 공연단체 간 공연료 조정에 대한 상호 협의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전 변경 승인 없이는 공연료를 감액하여 계약 불가

○ 국가계약법 및 「2027 문화예술 전국유통 지원사업」 매뉴얼에 근거한 공연단체 용역 계약 필수

○ 공연시설과 공연단체는 용역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가능) 작성 필수

○ 공연시설의 공연단체 용역비 선금 지급 권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7 문화예술 전국유통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기준 안내서」 의무사항 준수

- 사업참여자 역할, 참여 기간, 연령, 사례비 지급금액 등에 따라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및 신고·납부 필요
- 사업참여자 전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 참여 후 교육 이수증을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 현장에 참여하는 공연단체의 인력은 전원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공연 전 공연시설에 제출하고 공연시설이 확인·관리 필요

  * 상해보험 가입 시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대상 상해보험 활용 가능

○ **상해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공연장 안전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진행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단체**는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 공연시설이 「2027년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업 내용을 **공연단체와 협의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국고보조금의 최대 지원신청 한도 제한**

□ 문의 - 2027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공모사업 운영사무국

○ **(이메일) gokams@contestweb.net, (전화) 02-6953-1830**

*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